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71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박용갑 · 이병진 · 조인철
소병훈 · 이해식 · 박희승
곽상언 · 황명선 · 서삼석
박수현 · 정준호 · 황정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안전·거리질서 유지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과 장비,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등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가 부재함.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 내용이나 감독 등의 규정이 없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근거를 추가하며,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 또는 부상시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자기 시간을 희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조의3제2항·제3항·제6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모범운전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장비 지원
5. 모범운전자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
6.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등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생략) <u><신 설></u>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모범운전자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u> <u>1.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활동</u> <u>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u> <u>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u> <u>4. 모범운전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장비 지원</u> <u>5. 모범운전자의 권익 향상 및 복리 증진</u> <u>6.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 ③ <u>국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3항에 따른</u>
<u><신 설></u>	

<신 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생략)

<신 설>

<신 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

법칙금 등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 중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

<u>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u> <u>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u> <u>험에 가입할 수 있다.</u> ③ (생 략) <u><신 설></u>	<u>여</u>----- -----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u> <u>「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u> <u>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u> <u>하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u> <u>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수행</u> <u>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u> <u>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u> <u>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u> <u>있다.</u>
--	---